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7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정 범위 확대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 요원 자격 기준 인정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제2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 요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자동차 정비기능사 외에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 도장 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나.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인원 기준 완화(2명→1명)
(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10. 16. ~ 11.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교통실 택시정책과 위재영 (☎ 2133-234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을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5분의 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명 이상.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5분의 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자동차전문정비업 :”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5분의 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로 한다.

라. 원동기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제6조제2호 중 “2미터이상”을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p> <p>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 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 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 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u>자동차 종합정비업</u> 정비요원은 정비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p>	<p><u>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3항----- ----- ----- -----.</p> <p>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p> <p>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 정비업</u> ----- -----</p>

보수 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 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 -----
-----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명 이상. -----

-----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 -----
----- 1
이상

라. 원동기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②-----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기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이상
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기준) -----

-----.

1. (현행과 같음)
2. -----
----- 2미터 이상

-----.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인정범위 확대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를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교통실 택시정책과 위재영 (☎ 2133-2344)